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6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누212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동서학원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구합2582 판결
변 론 종 결	2016. 8. 19.
판 결 선 고	2016. 9.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30,432,070원, 등록세 21,975,740원, 농어촌특별세 14,687,270원, 지방교육세 14,992,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6

이 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학교법인으로서 경남정보대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8층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영화진흥위원회에 5년간 이 사건 건물 중 13, 14층(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제공하고,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발전기금으로 연 3억 6,000만 원을 기부받기로 하는 산학협력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영화진흥위원회에 제공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경남정보대학교의 영화·영상분야 교육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면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해당 사업(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5년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대신 원고에게 매년 3억 6,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기로 하였는바, 이와 같이 계약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그 금액도 상당한 고액인 점에 비추어 위 기부금액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실제로 장학금 용도로 특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6

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데, 비록 영화진흥위원회가 경남정보대학교의 교재를 감수하거나 교과과정심의에 참여하거나 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실습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 교육의 내용과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교육사업은 극히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주된 사용용도는 영화진흥위원회 자체의 사무로 보인다.

③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그 업무성격상 공익적 요소가 있기는 하나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가 원고의 교육목적 달성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

④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법이 예외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해당 부동산이 직접적인 교육사업에 이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법인이 취득세 등이 면제된 부동산을 실제로는 교육목적이 아닌 수익사업 등에 사용하면서도 부수적인 교육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경남정보대학의 방송영상과의 전공교재를 감수하고, 소속 B이 학기당 1회의 특강을 실시하며, 위 대학교 학생들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2주간의 현장실습을 하는 등의 산학협력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원고의 목적사업인 대학교육에 있어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6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한편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즉 원고가 영화·영상 분야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은 것은 실비변상차원이지 수익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부산시의 요청으로 공익적 목적을 가진 준정부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에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학생들에게 영화·영상 분야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든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천

판사 임상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16

판사 주은영